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가단51546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7. 3. 11.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50,991,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91,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0. 7. 11., 2004. 7. 15.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하론 대출약정 및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거래를 하였다(D의 C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2010. 11. 11. D에서 주식회사 E으로, 2011. 12. 30. F 유한회사로, 2013. 5. 29. 원고로 각 전전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4849), 법원은 'C은 원고에게 88,486,092원 및 그 중 28,374,249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2017. 3. 1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H, 자녀 I, J, C, 피고, K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이 있는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3 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991,2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분할협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하여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 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H, 자녀 I, J, C, 피고, K 등 6인이 있는데, C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 5인이 모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아버지인 망인과 어머니 H의 부양을 책임져 왔고,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도 어머니 H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 취지가 아니라면, C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까지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C에게는 구체적인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주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북도 구미시 대 883㎡

2. 건물

경상북도 구미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정류장 및 변소 및 식당

1층 정류장 198㎡

1층 휴게음식점 24.75㎡

1층 일반음식점 24.75㎡

부속건물

1층 변소 19.5㎡

- 이 상 -

